

건강한 국민, 신뢰받는 병원, 미래를 선도하는 협회가 함께 합니다.



사단  
법인

대한병원협회



수 신 상급종합병원장

참 조 보험(원무)부서장

제 목 상급종합병원 외래 경증질환 재진 진료분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제외 안내

1. 관련근거

- 가. 대한병원협회 보험 제2020-564(2020.9.28.)
- 나. 대한병원협회 보험 제2020-578(2020.10.7.)
- 다.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비지원부-6099 (2020.10.27.)

2. 관련근거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 안내(대한병원협회 보험 제2020-578) 및 보건복지부 고시 일부 개정안 질의 응답 안내(대한병원협회 보험 제2020-564)를 통해 상급종합병원에서 경증질환을 주상병으로 한 외래 재진 진료분은 '본인일부 부담상한제' 적용 제외 대상임 안내하였습니다. 시일을 두고 각각의 건으로 처리된 바, 관련 사항을 종합하여 안내합니다.

가. 시행일 : 2020.10.8.

나. 주요내용 : 상급종합병원 외래 경증질환 재진 진료분의 본인부담액은 본인일부 부담상한제 적용대상에서 제외

다. 개정 사항

-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3항의 3. 별표2 제3호 사목, 거목 및 너목에 따라 부담한 금액
- 경증질환 주상병 : 「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」 제6조[별표6] "약국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본인부담률 산정특례 대상" 질환(100개)

붙임 1.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개정(고시 제 2020-221호)

2. 별표6 "약국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본인부담률 산정특례 대상" 질환

3.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3항 일부 개정

※ 붙임자료 다운로드 : 본회 홈페이지(www.kha.or.kr) / 협회업무 / 보험급여국 공지사항.

끝.

대한병원협회장



차장 이다미 팀장 노환우 국장 정윤학 본부장 김종윤

시행 : 보험 제 2020-619 ( 2020.10.28 )

우편번호 04165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15(마포동 35-1) 현대빌딩13~14층 대한병원협회 / 홈페이지 : www.kha.or.kr

전화 02-705-9256 전송 02-705-9259 ( 대표FAX : 02-705-9209 ) E-mail : ldm@kha.or.kr